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4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전용기·고영인·김교흥

김민석 · 김병주 · 김영배

김정호 • 이원욱 • 장경태

정필모 · 최혜영 · 허 영

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겪고 있음.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출 저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잦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 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 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0(폐업으로 인한 해지 특례)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지나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으로 인한 해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 제10조의10(폐업으로 인한 해지 |
| | | 특례)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
| |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
| | | 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
| | | 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
| | |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 |
| | | 지할 수 있다. |
| |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
| | |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 |
| | | 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